

안내사항	
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(허가청)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
부과근거	
「농지법」 제38조제1항 및 제7항,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3조,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47조의2	
· 부과기준: (농업진흥지역 안) 개별공시지가의 30% (농업진흥지역 밖) 개별공시지가의 20% (㎡당 상한금액 : 5만원)	
가산금과 증가산금	
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% 가산금 부과되며,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마다(최대60개월) 증가산금이 1.2%씩 추가됩니다.	

(납부자 부인을 알람)

O C R

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(고객용)

통지번호 :

지로번호

성명(명칭)

전용목적

전용농지

납부금액

납부기한

까지

※ 가상계좌입금 :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인

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()의
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[인]

※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.
<안내>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납부안내
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
② 신용카드 납부 - (https://fpc.ekr.or.kr)
③ 인터넷지로 납부 - (https://www.giro.or.kr)
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
※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뒷면 참조

지로통지서 (금융기관용)									
O.C.R		지로번호		금액		원			
지로번호	고객조회번호	C	금액	C	Code				
() *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·변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									
통지번호									
성명(명칭)					전용목적				
납부금액					납부기한	까지			
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.									
< 한국농어촌공사 >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수납인									

안 내

-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·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합니다. 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합니다)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.
-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: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서비스(<http://fpc.ekr.or.kr/>)
※ 본인확인 방법: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
- 인터넷지로 납부: 인터넷지로 사이트(<http://www.giro.or.kr>) → 일반지로요금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→ 지로번호 입력(OCR 7001293) 후 이용기관 확인(한국농어촌공사) → 고객조회번호, 납부금액, 체크번호 입력 → 납부계좌, 계좌비밀번호, 연락처 입력 → 납부하기
-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